
**대학 · 종합병원 · 공장 등 건물군의
상세주소부여 업무처리 지침**

2014. 10.



안전행정부

목 차

1. 건물군 개념	1
2. 상세주소 부여확대	2
3.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기준	6
4. 주요 추진내용	10
5. 행정사항	10
※ 참고 : FAQ	14

I. 건물군 개념

1. 정의(「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가. 건물군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그 건물등 전체에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경우

※ 다수의 개별 건물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대학, 공공청사, 병원, 공장 등)

나. 건물군의 설정기준

- 주된 건물등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등(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화장실 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
-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관련 공공문서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2. 주소표기(「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 시·도 + 시·군·구 + 행정구·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 동·층·호 + (법정동, 공동주택명)

<공동주택과 건물군의 도로명주소 표기비교>

구 분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공동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27,	715동 203호	(삼산동, 주공아파트)
건물군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없음>	(봉천동)

※ 건물군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불가

3. 부여근거

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 제8조의4, 제16조제4항부터 제5항

○ 건물군 상세주소의 법정주소 사용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경우

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 제11조의12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단위 및 기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 제16조의2

○ 상세주소의 부여절차와 방법, 안내판 설치, 각종 공문서의 표기 일치

II. 상세주소 부여 확대

1.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

가. 추진배경

○ 개별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건물군의 주소생활 불편해소 필요

- 하나의 동일주소 사용으로 우편물의 수취·전달 지연 및 오배송 증가
※ 서울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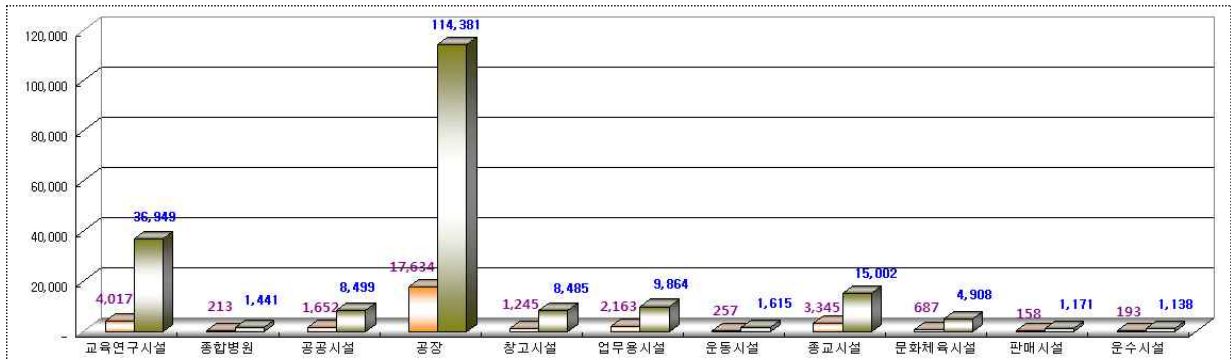
○ 건물군 내 정확한 위치안내로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가능

- 복잡한 건물군 내에서 개별 건물에 대한 위치안내가 어려워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신고가 어렵고, 응급기관은 신고 건물을 찾기가 곤란

나. 부여대상

○ 건물군 : 32,416개, 개별 동수: 206,709동

- (구분) 교육시설, 병원, 공공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2. 부여절차

가. 상세주소부여 신청

○ 신청인

- 건물군의 소유자(법인: 관리인 및 관리부서) 또는 임차인·점유자*
 - * 해당 건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법인 등
- 임차인·점유자가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신청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다만, 임차인 등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직접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임차인 등에게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위임장에는 위임인과 대리인의 관계,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 등 위임 사항을 명확히 기재(위임장에 대한 별도 서식은 없음)

○ 신청서

- '별지 제4호의2' 신청서에 의거 작성, 상세주소 신청도면*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상세주소 신청도면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함

- 신청인이 제출하는 상세주소 도면은 담당자가 건물등의 기초 조사를 수행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 복잡한 건물군에서 참고자료가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동·층·호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신청인 등과 협의 실시

○ 신청기관 및 방법

- 건물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신청

나. 기초조사 실시(공부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

○ (공부조사) 소유자·임차인 여부 확인

- 소유자(법인 등)가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에 기재된 소유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 임차인·점유자(법인 등)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부, 위수탁 계약서 등으로 임차 및 점유사실을 확인

※ 임대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물군의 소유자에게 확인

-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상세주소 부여 동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 법정서식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유자의 동의여부 등을 다른 방법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 (현지조사) 부여기준 확인

- 현지조사용 도면(도로명주소기본도, 상세주소 신청도면, 건물의 배치도 등) 등을 준비(신청인 또는 관리인(부서) 등을 통한 조사자료 확보)

- 임의의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층·호 표기가 '도로명 주소법령' 및 '건물군 상세주소부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적정 여부를 확인

※ 건물군의 동·층·호 표기현황이 '도로명주소법령' 및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 업무처리 지침'에 적정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부여기준에 적합하도록 부여방안 마련

- 현지조사 결과 등은 상세주소 '기초조사서'에 상세하게 기록

- 기초조사 수행 시 상세주소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를 기초조사서에 기록하고 반려 또는 불가 통보

○ 임차인·점유자의 신청 시에는 건물 전체를 조사하고 해당 신청인의 점유 공간(위치)에 대하여 부여기준에 따라 순차적 부여

다. 도로명주소대장 등록

○ 건물군의 동·층·호 부여현황, 위치 현황도, 부여(이동)일자를 도로명주소대장 상세주소부에 입력(KAIS 상세주소 전산 매뉴얼 참고)

○ 상세주소 위치 등을 안내하는 현황도면은 KAIS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부득이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등록

라. 결과통보 및 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건물군의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 도로명주소대장을 발급·첨부하여 통보

-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군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동: 종합안내판, 호: 개별안내판)
- 특히, 사업자·법인 등은 사업자등록부·법인등기부 등 법정주소 사용을 위한 공적장부의 주소변경을 안내
- 출입구, 구조변경(신축·증축 등), 건물의 분할·합병 등으로 상세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

마. 사후관리 및 확인사항

- 상세주소 부여 후 60일 이내에 상세주소안내판 설치여부 현장 확인
※ 부여한 상세주소와 설치한 상세주소안내판의 일치여부 등 확인
- 부여한 상세주소는 각종 주소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법정주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표기하고 ‘호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므로 전산 작업 후 반드시 홈페이지 통해 부여현황 확인

Ⅲ.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기준

1. 상세주소 부여·변경 단위(영 제11조의11)

- 가. 동 :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 등
- 나. 층 : 천정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써 두 개의 바닥면 (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 다. 호 :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2. 건물군의 상세주소 업무 구분

가. 신규부여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건물군에 새로이 동·층·호를 부여
- 임의로 사용하는 동·층·호가 상세주소 부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
 - 임의의 상세주소가 위치 찾기가 곤란하거나, 부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이 부여

나. 변경부여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한 건물군의 동·층·호를 합병 또는 세분 등의 사유로 인해 상세주소를 다시 부여하는 것

다. 폐지

- 건물군에 부여한 상세주소를 건물 멸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동 번호' 부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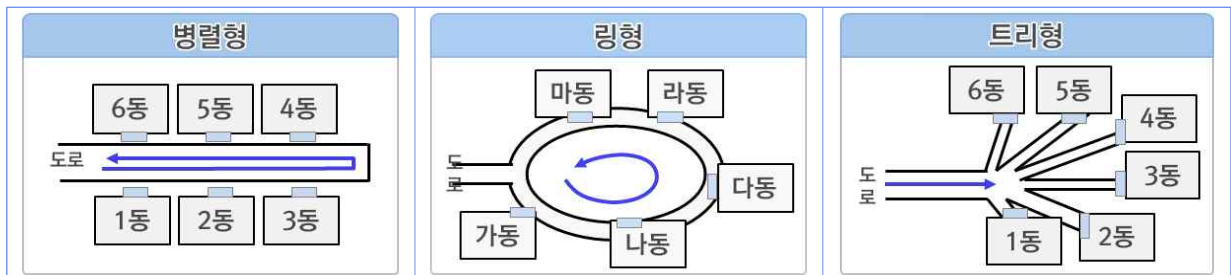
가. 임의의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군

- 연속숫자 또는 한글로 임의 표기·사용하고 있는 경우 현행대로 부여
- 영문과 숫자, 숫자와 한글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아라비아숫자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부여·등록
 - ※ 예시) W-1, E-2, N15-박물관 동 → 101·102 동 또는 가나 동 등
- 알파벳 등 외래어 사용 :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부여·등록
 - ※ 예시) A→에이, B→비 동 / Global→글로벌, Art→아트 동
- 숫자는 비선호 숫자(4, 18등)를 포함하여 시계반대방향으로 순차적 부여
 - ※ 예시) 1동 · 2동 · 3동 · 5동 (×) / 16동 · 17동 · 19동 (×)

나.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군

- 아라비아 숫자의 연속번호를 우선 사용하여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좌→우)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건물의 특성 등을 활용하여 부여하는 경우 한글 사용

※ 예시) 101·102·103 동, 1·2·3 동 등 / 가·나·다 동, 본관·별관 동 등



4. '층수' 부여기준

- 지표면을 기준으로 윗방향으로 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지하'를 붙여 1부터 부여



- 비선호 숫자(4, 18 등) 제외 금지

※ 예시) 1층 · 2층 · 3층 · 5층(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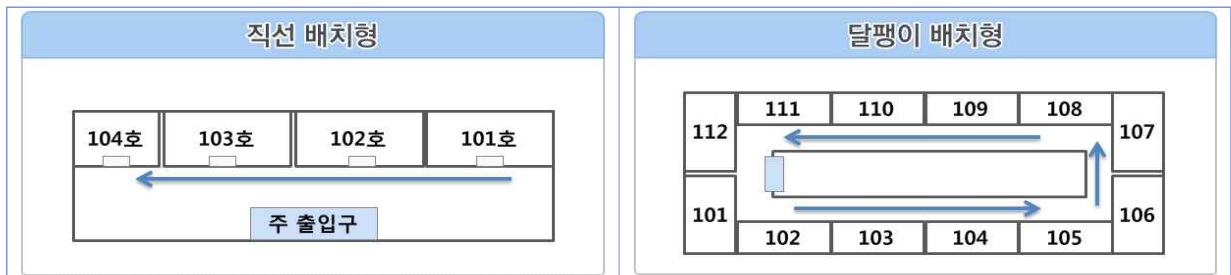
- 4→F · 지하→B(basement) 또는 U(underground)로 대체하지 말것

※ 예시) 1층 · 2층 · 3층 · F층 · 5층(x) / B101 · B201(x)

5. '호수' 부여기준

-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시계반대방향(좌→우)으로 부여

※ 예시) 101·102·103 호, 1·2·3 호/ 지하101.지하102 호, 지하 1층 1호 등



-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호수'가 표기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여방향과 관계없이 등록(다만, 위치 찾기가 곤란한 경우 재부여)
- 두 개 이상의 호수를 합병하는 경우 낮은 호수(또는 문자)로 부여하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높은 호수로도 통합하여 부여 가능

※ (예시) 204가호+204나호 → 204가호, 204가호+204나호 → 204호 등



- 하나의 호를 나누는 경우 호수 뒤에 문자를 추가하여 표기

※ (예시) 203호, **204호** → 204가호·204나호



IV. 주요 추진내용

1. 자료정비

가. 자치단체 별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군에 대한 DB구축

- 소재지, 건물군별 현황, 임의의 상세주소 표기유형, 소유자 현황 등

나. 현지조사를 위한 현장도면 등 기초자료 준비 및 정비

- 인터넷 지도, 도로명주소 도면,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도면 등

2. 홍보추진

가. 상세주소 신청 유도를 위한 건물군 유형별 개별신청 안내문 발송

- 안행부 : 홍보 안내문 디자인(안) 작성 및 자치단체 배포(~10.2. 예정)

나. 중앙·지방이 동시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 실시(수시)

다. 집배원을 활용(지역우정사업본부 협조)하여 우편물 배달 시 상세주소부여 홍보 안내문 수시 전달체계 유지

V. 행정사항

- (안행부) 건물군의 상세주소 신청안내 홍보물 배포 및 담당자 교육 실시(10.1.~10.30.)

- 상세주소 부여·관리 실태 및 홍보 추진상황 등 일제 점검(12.8~12.26)

※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 등 제도개선 사항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 (시도)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계획 수립

- 시군구 별 추진실적 및 관리실태 지도 및 홍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

- 매 분기별 부여실적 보고(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

- (시군구)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유형·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참고1 건물군의 임의의 상세주소 표기유형

□ 표기유형

- 알파벳·한글·아라비아숫자, 건물기능, 건축순서, 특정 명칭, 업무기능 등을 활용하여 임의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음
 - 알파벳/ 한글/ 아라비아숫자 : A·B·C 동/ 가·나·다 동/ 1·2·3 동 등
 - 건물기능/ 건축순서/ 방위 : 본관·별관/ 구관·신관/ 동관·서관 등
 - 인물명/ 업무기능 : 자강·온달, 아름·가천/ 법원동·검찰동·의회동 등

<참고: 주요 건물군별 표기유형>

- ▶ **(대학)** 단과대학명(법정관, 공과대학, 인문대학 등)/ 아라비아숫자의 순서(1·2·3 동)/ 특정명칭(현암관, 지성관, 영암관 등)
- ▶ **(병원)** 건물의 '주'·'보조' 기능(본관, 별관)/ 특징(어린이병동, 장례식장, 외래동)/ 아라비아숫자의 순서(1·2·3 동)
- ▶ **(공공청사)** 건물의 '주'·'보조' 기능(본관, 별관)/ 한글순서(가·나·다 동)/ 업무성격(법원동·검찰동)
- ▶ **(공장)** 건물용도(용접동, 경비동, 정비동)/ 건축순서(신관, 구관)
- ▶ **(창고/업무용)** 시설구분(도크동, 사무동)/ 업무유형(벤처동, 테크노동)
- ▶ **(운동시설)** 종목별(야구장동, 수영장동, 축구장동, 하키경기장동)
- ▶ **(종교시설)** 기능별(사제관동, 교육관동, 안식공간동, 수녀원동)
- ▶ **(문화/집회시설)** 기능별(대강당동, 공연동 전시장동), 특정명칭(소란동, 도란동)
- ▶ **(판매시설)** 유형별(청과동, 수산동, 경매장동)
- ▶ **(운수시설)** 기능구분(기지창동, 수송원대기동, 역사동)

□ 조사방법

- 시도별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군·동(棟) 수 파악, 유형별(교육, 병원, 공공업무, 공장 등 총 11개 그룹) 임의의 상세주소 사용현황 표본조사
 - 대상 : 총 1,650개 건물군/ 15개 시도(제주·세종 제외)
 - ※ 교육시설(324), 병원(119), 공공시설(444), 공장(117), 판매시설(71), 운수시설(81), 창고시설(75), 업무시설(67), 운동시설(73), 종교시설(120), 문화집회시설(159)

참고2

시도별 건물군 현황

구 분	부 여 대 상	
	건물군 수	동(棟)수
계	32,416	206,709
서울	1,121	10,845
부산	1,114	5,572
대구	319	1,720
인천	1,683	12,694
광주	371	3,244
대전	131	1,537
울산	1,829	19,613
세종	615	1,629
경기	12,615	73,230
강원	2,509	14,781
충북	423	3,524
충남	63	568
전북	264	2,718
전남	1,832	11,732
경북	3,970	17,899
경남	3,320	23,776
제주	237	1,627

※ 주소정책과-2981('14.6.20)호에 따른 시도 취합

F A Q

Q1. 법인의 경우 '민원24' 를 통하여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한 상세주소 부여 등의 신청인은
 - 개인(내국인·외국인·재외국민)과 법인사업자(내국인·외국인)로 구분됨
 - 따라서, 법인의 경우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하여 상세주소 부여 등을 신청할 수 있음

Q2. 법인·공공기관인 경우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직권 부여할 수 있는지?

- 상세주소는 소유자 중심의 신청주의 제도임
 - 법인·공공기관 등은 법정 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아니더라도 공문접수 등을 통해 시·군·구청장의 부여가 가능할 것임

Q3. 신청인이 건물군 현황 등을 작성한 신청도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 담당 공무원이 건물의 실제 사용현황 등에 대해 기초조사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소유자 및 건물 사용자로부터 건물군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것임
 - 상세주소 신청도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Q4. 임차인이 상세주소부여 등을 소유자에게 요청한 날에 대한 확인 방법은?

- 도로명주소법령에 따른 상세주소의 신청은 소유자와 임차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에게 우선 상세주소 부여를 요청한 후 60일 동안*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에 가능
 - * 임차인의 법률적 신청기간 단축 등 「도로명주소법」 일부 개정 중
- 건물군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내용증명', '등기우편', 각종 신청문서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 법인의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기관 등을 포함
- 임차인이 전화·SMS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수신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처리

Q5. 임의의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 - '을 사용한 '동번호'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부여방법은?

- 75동·75-1동, 100동·100-1동처럼 본 건물의 부속건물의 의미로 ' -1)'를 붙여 표기하고자 하는 '동 번호'의 경우
 - 건물 내부의 통로를 이용해 연결되어 있거나, 건물이 붙어 별도의 건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숫자를 사용하여 부여하고
 - 건물이 별도의 출입구로 분리 또는 개별 건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 - '를 사용하여 부여
- 도로명주소대장 등록은 KAIS 등록 전산 매뉴얼을 참고하여 입력

1) 하이픈(hyphen) : 낱말을 합치거나 음절을 나눌 때 사용(붙임표)

Q6. 어떠한 경우에 동·층·호를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는지?

- 건물의 사용범위·구조·독립성 등에 따라 아래의 상세주소 부여 방식을 참고하여 부여할 수 있음

번호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 받은 건물등의 구조	상세주소 부여 방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동이 있고 각 동에 2개 이상의 층과 각 층에 2개 이상의 호가 있는 경우 	동 번호, 층수, 호수 모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동으로 각 동에 1개의 층만 있고 각 층별 2개 이상 호가 있는 경우 	동 번호와 호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동으로 2개 이상 층이 있고 각 층에 호가 없는 경우 	동 번호와 층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 동이 있고, 각 동에 1개의 층과 1개의 호만 있는 경우 	동 번호만

1. 동번호와 층수, 호수 모두 부여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동이 있고 각 동에 2개 이상의 층과 각 층에 2개 이상의 호가 있는 경우
- 동·층·호 표기 : 나동 2층 2호

2. 동번호와 호수만 부여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동으로, 각 동에 1개의 층만 있고 각 층에 2개 이상 호가 있는 경우
- 동호 표기 : 가동 1호

3. 동번호와 층수만 부여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동으로 2개 이상 층이 있고 각 층에 호가 없는 경우
- 동·층 표기 : 나동 2층

4. 동번호만 부여하는 경우



- 건물군의 면적이 넓거나 많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의 건물번호로는 위치 찾기 등이 곤란한 건물군에 대상으로 우선 부여 추진

Q7. 하나의 '동번호'를 부여받은 건물이 두 개 이상의 건물로 나누어지는 경우의 상세주소변경 방법은?

-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동번호'를 부여한 경우
 - 건물의 수가 적어 위치 찾기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본번의 숫자의 다음 숫자를 사용하여 부여
 - ※ 예) 1동 · 2동 · 3동 · **4동** · 5동의 경우에는 **6동**으로 부여(4동을 나누는 경우)
 - 다만, 순차적인 숫자의 사용이 위치 찾기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 - '을 사용하여 부여
 - ※ 예) 111동 · 112동 · 113동 · **114동** · 115동인 경우에는 **114-1동**으로 부여
- 한글을 사용하여 '동번호'를 부여한 경우
 - 한글의 순서를 활용한 경우에는 마지막 순서 다음을 사용하여 부여
 - ※ 가동 · 나동 · **다동** · 라동의 경우에는 **마동**으로 부여
 - 건물의 특징·기능 등을 활용하여 부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원칙 없이 기능을 활용하여 부여

Q8.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군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상세주소부여 방법은?

- 상세주소부여는 복잡한 건물군 내에서의 위치찾기 편의 등을 위한 제도임
 - 건물과 건물 사이에 신축이 있는 경우 건물 수가 적어 건물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의 연속번호를 사용하여 부여
 - 건물의 수가 많거나 현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 - '을 사용하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여(Q5, Q7 참조)

Q9. '동번호'를 부여받은 건물군에서 두 개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합병된 경우 상세주소변경 방법은?

-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하여 '동번호'를 부여받은 각각의 개별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합쳐져 '동번호'를 하나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빠른 숫자를 사용하여 변경
 - 5동과 6동을 합쳐야 하는 경우에는 5동으로 변경. 다만, 각종 공문서에 등록된 건물 소유자 등의 주소가 6동에 위치한 경우에는 6동으로 등록할 수 있음

Q10. ' - ' 을 사용하여 동번호를 부여한 경우 읽는 방법은?

- 하이픈을 사용하여 동번호를 부여한 경우 ' - ' 표시는 '의'로 붙여 읽음

※ 예)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75-1동 101호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일번, 칠십오의 일동 백일호

Q11. 상세주소안내판의 규격 및 설치 기준은?

- 상세주소안내판은 종합안내판과 개별안내판으로 구분
 - (종합안내판) 건물군 전체 '동'현황, 건물군 內 개별 건물의 전체 '층수' 또는 전체 '호수'를 안내
 - (개별안내판) 건물 內(동)에서 개별 출입문(호수)를 안내
- 상세주소안내판의 경우 규격·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시인성·안정성·건물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
 - 개별안내판의 경우 출입문의 중앙 상단(1.6~1.8미터 높이)에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출입문 형태나 건물 전체의 일체감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위치변경 가능

Q12.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사항은?

- 상세주소안내판은 다수의 건물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의 건물군에서 개별 건물 및 건물 내에서의 위치를 쉽고 편리하게 찾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임
 - 도로명주소법령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하지 않는 경우 벌금부과 등 법률적 제재수단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군 소유자 등에게 상세주소안내판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적극 안내하여 설치를 유도

**Q13. 소유자 신청 시 건물군의 임차인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지?**

- 도로명주소법령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임차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 소유자 등을 통해 임차인·점유자 현황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부여결과 통보(고지·고시절차는 없음)
 - 개별 건물의 출입구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여결과 등을 게시하도록 함